

# '92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 檢 討 報 告

1. 提出者 : 忠清北道知事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2年 7 月 / 日

나. 回附日字 : 1992年 7 月 / 日

3. 提案理由

- '92 公有財産管理計劃을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忠清北道公有財産條例 第 7條의 規程에 依하여 '91年度에 道政調整委員會審議와 道義會의 議決을 받아 確定하였으나
- 主要事業의 追加 施行等으로 公有財産의 取得 및 賣却에 對한 變更事由가 發生되어 이에 따른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變更하여 效率的인 管理를 하고자 道義會의 承認을 구하는 것임.

## 4. 主要骨子

### 公有財産의 取得 및 賣却

#### 가. 財産의 取得

- 山林廳告示 第 91 - 18 ( '91. 12. 3)號에 依據 指定告示된 自然 休養林 造成計劃 地區內 管理舍等 住民便益施設 新築

槐山郡 延豊面 元豊里 山 1 - 1 番地內 建物 7棟 191.41m<sup>2</sup>

(管理舍 1棟 82.56m<sup>2</sup> 亭子1棟 23m<sup>2</sup>, 화장실 1棟 19.81m<sup>2</sup>, 炊事場 1棟 16.51m<sup>2</sup>, 山幕 3棟 49.53m<sup>2</sup>)

#### 나. 財産의 賣却

- 龍岩地區 宅地開發事業에 編入되는 道有雜種財産 (廢川敷地)을 土地開發公社에 賣却

- 清州市 龍岩洞 770 - 70番地外 4筆地 1,105m<sup>2</sup>

- 清州市 福臺地區 連結道路 (福臺洞 - 中部 I.C 進入路間) 工事に 編入되는 農村振興院 敷地 및 支障物을 清州市에 賣却

- 清州市 福臺洞 266番地外 2筆地 624 m<sup>2</sup>

- 清州市 福臺洞 266 - 15番地內 警備室 1棟 19.83m<sup>2</sup>

- 建築法規程의 垜地面積 最小限度에 未達하는 土地를 그 占有者 (民願人)에게 賣却

- 清州市 서문동 165 - 1番地外 1筆地 105.7m<sup>2</sup>

## 5. 檢討意見

'92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을 檢討한바,

### 가. 財産의 取得

山林廳 告示 第 91 - 18 (91. 12. 3)號 指定告示에 依하여 槐山郡 延豊面 元豊里 山1 - 1番地內 道有林 272 ha에 92년부터 94년까지 3次年計劃으로 조령산 自然休養林을 造成하게 되는바,

이에 따라 道民의 觀光休養需要를 充足시키는 한편 靑少年들의 自然에 對한 重要性을 認識시키는 산교육장으로 活用코져 造成地區內에 管理舍 1棟 82.56m<sup>2</sup>, 亭子 1棟 23m<sup>2</sup>, 화장실 1棟 19.81m<sup>2</sup>, 炊事場 1棟 16.51m<sup>2</sup>, 山幕 3棟 49.53m<sup>2</sup>로 總 7棟에 191.41m<sup>2</sup>의 住民 便益施設을 新築코자 하는것으로서 本 計劃案에 대하여는 取得承認 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 나. 財産의 賣却

#### ① 宅地開發 및 道路建設編入用地 賣却

清州市 龍岩洞 770 - 70番地外 4筆地의 廢川敷地 1,105m<sup>2</sup>가 建設部 告示 728號 (90. 10. 30)에 依據 承認된 龍岩 宅地開發 事業地區에 編入케되어 韓國土地開發公社에 賣却하려는 것이며,

農村振興院 敷地中 2筆地 624m<sup>2</sup>와 警備室 1棟 19.83m<sup>2</sup>가 福臺洞에서 中部 I.C 區間 道路建設工事に 編入되는바,

이는 國家施策事業인 宅地開發 및 道路建設에 따른 賣却임으로 本 計劃案은 賣却 承認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② 垡地面積 最小限度에 未達되는 土地賣却

濟州市 서문동 165 - 1番地外 1筆地 105.7m<sup>2</sup>는 道有財産으로  
一般商業地域에 2筆地로 分散되어 있어 建築法 第49條 및 同法 施行令  
第85條의 垡地面積 最小限度에 未達되어 建築物을 新築 할수없는  
地域의 垡地로서 效用價値가 없으므로,  
隣接土地 所有者에게 賣却함이 效率的 이라고 思料됨.

添 附 : '92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 關 係 法 令 拔 萃

□ 建築法

第49條 (垡地面積의 最小限度) ① 建築物의 垡地面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市·郡·區의 條例로 정하는 規模이상이어야 한다.  
 ② 建築物이 있는 垡地는 第1項, 第33條, 第47條, 第48條,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未達되게 分割할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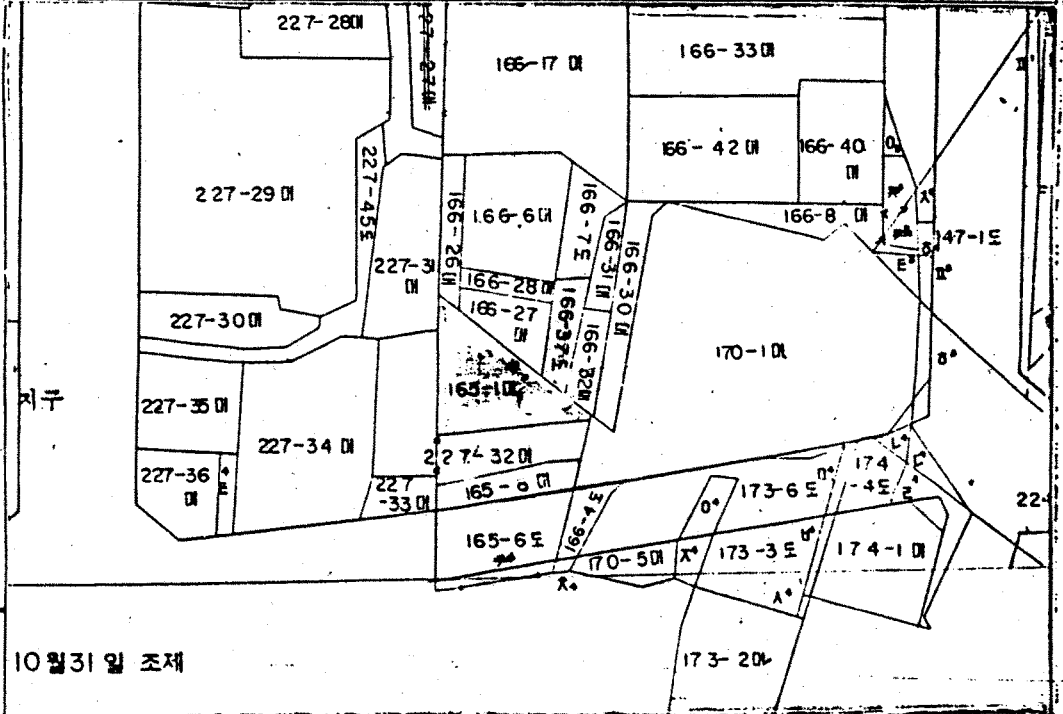
제8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 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전 용 주 거 지 역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일 반 주 거 지 역	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이하
준 주 거 지 역	7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이하
중 심 상 업 지 역	30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이하
일 반 상 업 지 역	1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이하
근 린 상 업 지 역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전 용 상 업 지 역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일 반 공 업 지 역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준 공 업 지 역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보 전 녹 지 지 역	35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이하
생 산 녹 지 지 역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2-180)  
신간동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원 (서)		처리기간
제 24450호	9	즉시
신청인	성명	주소
	신간주 소	신간 227-32
확인지번	청주소	번지
	신간 동·가 227	번지 32 호
화 인 내 용	용도지역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 (중심, 근린)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보전, 정산, 자연) 녹지지역
	용도지구	풍치, 주차장정비, 미관 (1, 2, 3, 4, 5종), 아파트, 방화, 집단방화, 택지개발예정, 고도(최저, 최고), 기타( )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축, 집합), 공원, 학교, 시설녹지, 광장, 시장, 유원지, 기타(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재개발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내, 저축, 집합) 기타( )
	도시계획입안사항	
	기타	

축척 1:1000분의 1 도시계획확인도면 도시계획도 제 1 호



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90년 7월 9일  
 청주시장